

정관 개정안 302

~~굵은 글꼴의 취소선은
삭제된 내용을 나타냄~~
굵은 글꼴의 밑줄은 추가된
내용을 나타냄

제 6조 임원

노조 자원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기 위해 총괄 부회장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이도록 제 6조 1항을 수정한다.

제 1항. 국제 노조의 임원은 국제 회장, 국제 사무 총장, **75**명의 전임 총괄 부회장, 25명의 부회장(최소 2명 이상은 캐나다 지부 조합 회원) 및 40명의 집행위 임원(최소 2명 이상은 캐나다 지부 조합 회원이며 1명은 퇴직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제 회장, 비서-재무국장 및 **75**명의 총괄 부회장은 대부분 국제 컨벤션에서 모인 모든 대표단이 선출한다. 캐나다 부회장 2명과 캐나다 집행위 임원 2명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출된다. 부회장 및 집행위 임원은 퀘벡 주 이외의 모든 주에서 지명 및 선출된다. 그러나, 퀘벡 주의 부회장과 퀘벡 주의 집행위 임원이 동일 지구 노조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 한해 부회장 및 집행위 임원은 퀘벡 주에서만 지명 및 선출된다. 캐나다 부회장 및 집행위 임원은 본 정관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선출된 대표단으로 구성된 캐나다 협의회에 의해 컨벤션에서 선출되며 이것은 국제 노조 임원이 선출되는 국제 컨벤션 이전 90일 이내에 개최된다. 기타 모든 부회장과 집행위 임원(퇴직 회원 포함)은 대부분 지명되고 선출된다.